

2024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4년도 디지털협업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표기업 중심으로 전문성 결합, 생산성 강화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장·기업 등 다자간 데이터 기반 상호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대표·참여기업)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개선, 공동·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해 IoT, 클라우드 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기획기관) 전략수립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컨소시엄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선정된 컨소시엄의 정부지원금 5%이내에서 운영비 책정 가능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 (도입기업 컨소시엄)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 도입기업은 제조기업 기준 5개사 이상으로 구성
 - (공급기업 컨소시엄)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 공급기업 간 협력 등 희망하는 기업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기획기관) 디지털협업공장 확산방안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지역TP, 공공기관 등
- 공통사항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 ('14년~'22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내 상생과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 (선정 후 별도 안내)

□ 지원 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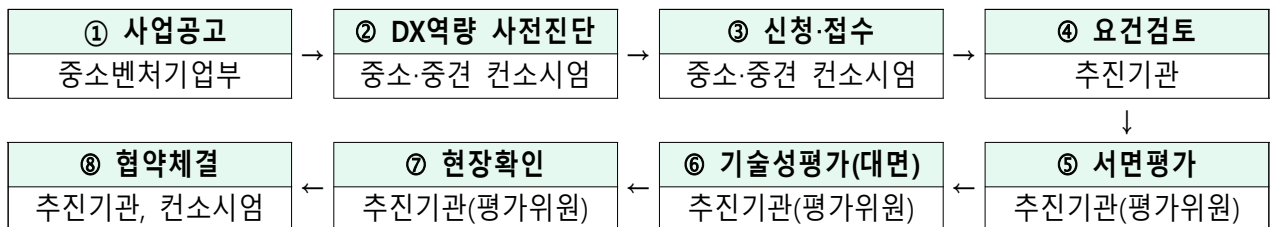
- (지원 규모) 60억원,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 조건)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0억)

구분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최대)	사업기간 (최대)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12개월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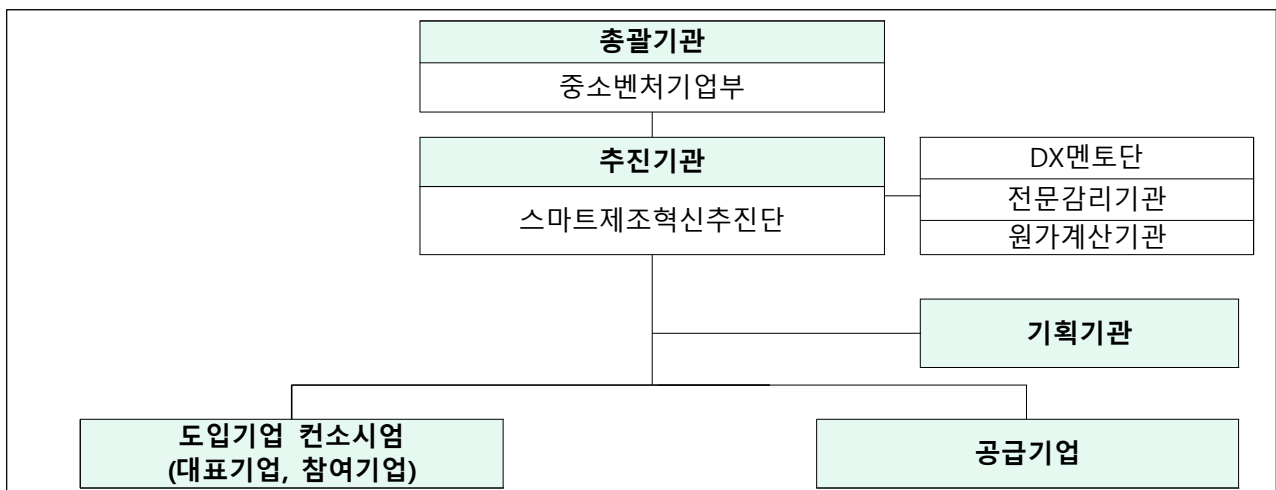
* 사업비 구성(예시) : (공동·협업) 6억원(1.2억원x5개) + (개별보급)14억원(2.8억원x5개)

구분	총사업비			사업비 구성		
	직접사업비 (50%)	민간부담금 (50%)	합계 (100%)	공동활용 (30%)	개별구축 (70%)	합계
합계	1,000	1,000	2,000	600	1,400	2,000
A 클러스터						
대표기업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1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2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3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4	200	200	400	120	280	400

□ 지원 절차



□ 추진체계



II. 주요사항

구분	주요내용
모집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모집·선정 진행 * 기 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4년 사업신청 가능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중소기업(5개 이상) + 공급기업 +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DX역량 자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시 대표기업은 DX역량 자가진단 실시 필수 단, 자가진단은 과제 선정과 무관하게 대표기업 DX역량 확인자료로 활용
과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획기관을 통해 디지털협업공장 구축과정 동안 주요단계별 컨설팅, 교육 등 전주기 과제관리 정부지원금의 5% 이내에서 운영비 편성 가능

III. 지원과제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6일(수) ~ 2024년 3월 29일(금) 17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대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공통, 개별, 기획)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디지털전환(DX) 역량평가 자가진단 현황표
8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①서면평가 → ②기술성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구분		개요	평가기준
①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의 서면평가(100%)를 통해 선발	• 디지털협업공장 연결효과 등 평가하여 60점 이상 기술성평가 추천
②기술성평가	컨소시엄	•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컨소시엄 지원 적합성을 평가	• 협력·연결·파급·개별기업 효과 등을 평가점수에 가점을 반영하여 산출
	기획기관	•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기획기관의 역량을 평가	• 기획기관의 보유역량(40%) 및 사업추진내용(60%)으로 중심으로 평가
③현장확인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적/부 판정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④최종선정		•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승인(중기부)	-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

○ 선정방법

① 서면평가 : 디지털협업공장 연결효과,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

평가항목		배점
공급망 연결효과	• 디지털협업공장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5
	• 대표·참여기업간 협업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15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10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10
지원 적정성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10
도입기업 역량	• 사업목표의 적절성	5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5
	• 핵심지표(KPI)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5
	• 고용창출, 시장확대 등에 대한 의지 및 효과	5
총 점		100

② 기술성평가 :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기획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

- 도입기업 컨소시엄 평가

평가 항목		배점
도입기업 역량	• 디지털협업을 추진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현황이 양호하여 지속 가능한가?	10
	•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합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가점제외한 도입기업 컨소시엄 점수가 높은 기업, ②도입기업 컨소시엄 평가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기획기관 역량평가

평가항목		배점
보유역량	• 신청기관의 보유한 전문성	10
	• 추진실적 및 디지털협업공장과의 연계성	10
	• 기관 조직의 구성현황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	10
	• 컨소시엄 연계지원 및 연계프로그램 보유 여부	20
사업수행 내용	• 디지털협업공장 및 도입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이해도	10
	• 디지털협업공장 지원체계의 적정성	10
	• 디지털협업공장 지원 방안 및 과정의 구체성	10
	• 전략수립 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 및 일정의 적절성	10
	• 전담 PM 등 참여인력 및 사업비 구성·배분의 적절성	10
합계		100

③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및 가점 여부 확인

*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공정 및 설비 등 일치, 신청가점 사실여부 등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기타사항

- 디지털협업공장 도입기업은 제조데이터 표준* 적용시 우대

* IEC 63278-1 :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Part1: Asset Administration Shell Structure

- 제조데이터 표준모델*과 연계하여 현장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정보들을 표준화, 장비·공정의 상호운용성 확보**

* EU AAS 표준모델을 벤치마킹한 데이터 표준화 도구로 별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상반기 내 표준 참조모델 배포 및 교육 예정

** 최종 선정평가 시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실증 요건 검토 및 점검

<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적용 기본 요건(예시) >

- **스마트공장 수준** : **중간1 이상** 솔루션(ERP, MES, SCM, PLM 등) 구축기업
- **보유 인프라*** : (통신) **OPC-UA** / (자동화 수준) **부분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 / (설비) 2000년대 이후 생산되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설비·장비** 보유
 - * 공장 전체가 아닌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인 공정라인 기준
- **조직** : IT 담당자 또는 전산팀 보유

- 필요시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적용과 관련한 통신장비(DAQ 등) 및 센서 추가 등 구축비용을 사업비에 계상 가능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1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과제별 RCMS 사업비 내역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개별 도입기업 사업비 중 ‘기타비용’에 편성 필수

< 회계정산 수수료 >

구 분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50백만원 이하	500천원	부가세 포함
200백만원 이하	700천원	
400백만원 이하	1,000천원	
400백만원 초과	1,300천원	

* 정산대상 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선정된 도입·기획·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②스마트공장, ③제조데이터 표준모델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도입기업, 기획기관,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 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도입기업 - 내 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③제조데이터 표준모델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도입기업, 기획기관,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 용 :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및 가이던스 활용, AAS 기반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체계 등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과제선정 시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절차·의무 등을 준수 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 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 사전에 공급기업을 매칭한 경우 최소요건(실적 및 인력 보유 등) 충족 필요

□ 지원제외대상

○ 최종 선정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이후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가점 내용** : 대표기업이 해당할 경우 가점부여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수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월가동일 20일 이상, '21년 이후 구축기업)
제조데이터 표준 도입기업 (* 가점 5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협업공장 도입기업은 제조데이터 표준* 적용시 * IEC 63278-1 :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Part1: Asset Administration Shell Structure ** 기술성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인

IV. 문의 및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0961

붙임 1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사업별·지원유형별 신청가능 여부

□ '24년 사업별 신청가능 여부

사업명	내용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①~⑥ 사업간 중복 수행 불가 (①~⑥사업에 대한 수준측정은 사업종료시 진행)
②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	
③ 자율형공장	
④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⑥ 디지털 협업공장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공장을 자체 구축한 경우 신청
⑧ 스마트공장 AS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완료 후 신청 (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⑨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①~⑥ 사업 중 하나와 ⑨,⑩ 사업 동시수행가능 ※ ①~⑥사업에서 FEMS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만 ⑨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동시수행가능
⑩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既 구축수준에 따른 '24년 신청가능 여부(자율형공장 신청자격은 공고참조)

연도별 既 구축수준			목표수준('24년 지원가능 유형)	
구분	지원년도	현재수준*	중간1	중간2
A	'14년~'19년 (정부지원)	기초	지원가능	지원가능
		중간1	지원가능	지원가능
		중간2	지원불가	지원가능
B	'20년~'23년 (정부지원)	기초	지원가능	지원가능
		중간1	동일수준지원가능	지원가능
		중간2	지원불가	동일수준지원가능
C	'19년~'23년 (수준확인 기업)	기초	지원가능	지원가능
		중간1	지원가능	지원가능
		중간2	지원불가	지원가능

* (현재수준) 최근 구축 기준의 수준을 의미(예시 : '19년에 구축하고 '20년에 구축한 경우, '20년도가 기준)

※ 고도화1의 경우, 스마트화 수준 업그레이드로 중간1 이상을 목표로 구축

(①ICT미적용 or 기초 → 중간1, ②중간1 → 중간2)

※ 동일수준의 경우, 스마트화 수준별 1회만 가능(①중간1 → 중간1, ②중간2 → 중간2)

※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